

연세대 일용직, 중앙대 조무원 사건 타결

여91.11.8

근본문제 타결 안 된 아쉬움 남겨

법정투쟁으로까지 끌고갔던 연세대학교 '여성용원 정식고용 문제'(본지 90년 9월 21일자)가 만20개월만에 학교측과의 합의로 타결됐고 중앙대학교 '조무원 조기 정년제' 문제(본지 91년 9월 20일자)가 2개월간의 씨름끝에 타결돼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중에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둘러싼 첫번째 법정투쟁으로 여성계의

관심을 끌었던 연세대 여성용원 정식고용 문제는 해수로 3년만에 해결된 사건이다.

연세대에서 20년간 일당 5천1백원을 받는 일용직 용원으로 일해 온 남길자(45) 씨와 윤복순(50) 씨가 학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낸 것은 작년 9월. 89년 12월 30일 쟁의를 시작한 이래 성과가 없자 법정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1심에서 학교측에 패소하자 다시 항소, 사회의 여론화를 의식한 연세대가 합의를 봄으로써 타결됐다.

그동안 연세대 여성일용직은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18만6천원의 기본급과 일당의 4백퍼센트의 상여금, 조정수당을 합쳐 20여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으나 남성용원들은 7, 8천원의 일당을 받으며 해마다 승봉되고 정식용원으로도 임명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합의안에 따라 여성 용원에게 일당을 1만4천원(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씩 지급하고(92년 3월부터 시행), 남길자 씨, 윤복순 씨, 한귀자 씨, 문명숙 씨 등 4명은 정식사원(위생원)으로 발령을 냈다.(9월2일자)

이 사건이 일단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남자직원들과의 여전한 임금격차, 나머지 일용직들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가 그것.

연세대 노조측은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측은 앞으로 더이상 정식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일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조무원 28세 정년'으로 해임당했던 이광전(28) 씨 등 4명의 부당조기정년 사건은 노동부가 복직명령을 내리는 등 학교측의 조치가 부당함이 지적되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버티던 중대측이 지난 22일자로 이들을 복직시킴으로써 타결됐다.

이는 학교측이 노동부의 복직시한일인 15일에서 1주일 연기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아직 부서발령과 임금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측은 조무원 정년 연령을 조금 연장한 35~40세로 묶으려는 반면 이광전 씨는 원래 직원 정년인 57세로 주장하고 있어 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 서기보로의 승급문제, 홍보조절문제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